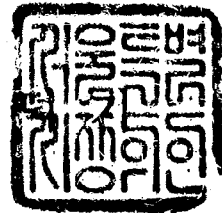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합숙생활지도및편찬수당지급

규정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8년 2월 16일

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강



서울특별시합숙생활및편찬수당지급규정폐지규정안

제정일자	1998. 2. 9	제정처	서울특별시
제정목적	합숙생활및편찬수당지급규정	제정대상	공무원
제정인	김영	제정직	서울특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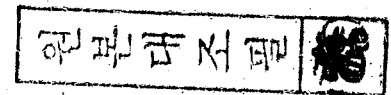
1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공무원교육원 교직원에 대한 합숙생활 지도 및 편찬(시험분제 편집 등)수당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·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서울특별시시험수당지급조례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존치실익이 상실된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지방공무원수당규정, 지방공무원임용령
서울특별시시험수당지급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

서울특별시훈령 제 호

서울특별시합숙생활지도및편찬수당지급규정폐지규정안

서울특별시합숙생활지도및편찬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

우137-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/ 전화 (02) 3488-2325/ 전송3488-2347

처리부서 : 전형실(본관3층) 담당 : 강창권

문서번호 전형 11030 -77

시행일자 1998. 2. 3

수 신 법무담당관

참 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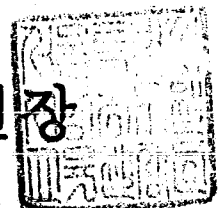
선결			지시		
접	일자		결재	법제국장	*51
수	시일	2. 4		법제심사국장	
	번호	442	공람		
처리과					
담당자					

제 목 서울특별시합숙생활지도및편찬수당지급규정 폐지규정안 발령의뢰 (중요)

1. 서울특별시합숙생활지도및편찬수당지급규정 폐지규정안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폐지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서울특별시합숙생활지도및편찬수당지급규정 폐지규정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

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

우137-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/ 전화 (02) 3488-2325/ 전송3488-2347

문서번호 전형 11030 -17

시행일자 1998. 2. 9

(제 1 안)

수 신 내부결재

참 조

위급		시 장
보존		
원 장	진결	
교수부장		법무담당관 심사필
교육지원과장		교육운영과장
전형실장		
기안	강창권	협조

제 목 서울특별시합숙생활지도및편찬수당지급규정폐지

1.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훈령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합숙생활지도및편찬수당지급규정은 그 근거규정이 기 폐지되었고, 현재 합숙생활지도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(대통령령제15261호) 제16조에, 편집수당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(대통령령 제15167호) 제48조와 서울특별시에시험수당지급조례(조례제2432호) 제3조에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따로 붙임과 같이 서울특별시합숙생활지도및편찬수당지급규정을 폐지코자 합니다.

따로붙임 서울특별시합숙생활지도및편찬수당지급규정폐지규정안 1부. 끝.

(제 2 안)

수 신 법무담당관

제 목 서울특별시합숙생활지도및편찬수당지급규정폐지규정안 발령외뢰



1. 서울특별시합숙생활지도및편찬수당지급규정 폐지규정안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폐지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서울특별시합숙생활지도및편찬수당지급규정폐지규정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